휴직자 복무지침

제 정 2020. 6.24 개정(1) 2021. 12.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취업규칙」 제6장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의 휴직 목적 외사용을 방지하고 휴직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휴직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한국투자공사법」제28조의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에 앞서 별지 제1호의 휴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 기간 중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하며, 휴직 중인 직원은 복무상황신고서를 매반기의 말일(6월 30일 및 12월 31일)까지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복무상황을 최초로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반기의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 2. 매반기의 말일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 시에 복무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복무상황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 시의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제6조(휴직실태 점검) 인사담당 부서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관련 내용을 전자메일 등으로 고지함으로써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 ②인사담당 부서장은 정기 점검을 매년 1월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휴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 목적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3. 고의성 여부
-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 ④제2항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휴직 목적 외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휴직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상벌세칙」 제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휴직하는 직원(이 지침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휴직자 확인서

- 1. 휴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사에 복직 의사를 밝혀야 하며,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을 신청해야 함
- 2.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의 복직 절차 진행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함
-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취업규칙」 제40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4. 휴직 중에도 공사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당초 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휴직이 취소되거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적정 사례》

- 인병휴직 중 질병치료와 무관하게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여행
- 육아휴직 중 자녀를 부모님댁에 맡기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이수한 후 변호사 자격증 취득
- 육아휴직 중 자녀를 부모님댁에 맡기고 장기간 해외 체류
- 해외 **연수휴직** 중 질병이 발생하여 **조기 귀국**했으나 당초 휴직기간 만료시까지 조기 귀국 사실 미신고
- 가족 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 치료목적 외의 사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
- 5. 휴직자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복무상황을 신고**(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청시 휴직자는 **자료제출에 적극 응하여야 함**
- 6. 휴직자는 휴직 전 소속 부서장에게 본인 연락처 및 부재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야 하며,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휴직자의 경우 장기간 해외 출 국시 소속 부서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함
- 7. 휴직 중에도「한국투자공사법」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를 준수해야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휴직종류	명령휴직 / 인병휴직 / 연수휴직 / 육아휴직 / 배우자동반휴직 / 가족돌봄휴직 등				
휴직기간	2000.00.00. ~ 2000.00.00. (0년 0월)				
겸직금지의무	<u>휴직 중</u> 영리목적 업무 종사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당됨에 체크하는 경우 세부내용 기재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국외연수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당 시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	류기간	'OO. O. O. ~ 'OO. O. O.
			③ 체·	류목적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해당됨, □해당 없음) ※ 해당됨에 체크하는 경우에만 오른쪽 항목 작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고의성 (□해당됨, □해당 없음)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허용, □불허용)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해당됨, □해당 없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휴직자 복무지침」제7조의 조치에 따르며,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하					